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7-82호
2017. 11. 3.(금)

차 례

훈 령(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훈령 제422호)1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23호)10

고 시(2)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7-215호)1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216호)14

공 고(7)

- 건축법 상 도로지정 변경 공고(공고 제2017-844호)1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846호)16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D등급) 공고(공고 제2017-850호)17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7-858호)1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860호)19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공고 제2017-861호) ...20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공고 제2017-862호)22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2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구의 명칭, 심벌 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를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신청대상)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행사는 소관부서의 추진·지원계획 수립으로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행사참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3. 행사내용의 충실성 또는 규모의 적정성(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의 행사 여부 등)
4.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구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통보한 경우

관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향후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제8조(승인취소 등) ① 구청장은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허위·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이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통보서

승인부서	행 사 명	승인단체	장 소	승인기간	승인일자

【별지 제3호서식】

후원명칭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일시 / 장소	일시		장 소	
행 사 기 관	주 최		후 원	
참 여 인 원				
후원받은 내용	*후원명칭 사용, 구청장상, 축사 등			
행사세부내용	*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현황 등			
특 기 사 항	*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 신청 및 승인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후원명칭 사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제1조 및 제2조).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대상에 대하여 정함(제3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승인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후원명칭 사용기관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정함(제7조).
- 후원명칭 승인취소에 대하여 정함(제8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함(제9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2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다목 중 “가료”를 “치료”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조물 등 관리 규정」의 개정) 대전광역

시 대덕구 영조물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사리”를 “골재”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훈령포함)에 사용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2개의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등 2개의 규정에 대하여 정비함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가료”를 “치료”로 변경
 - “사리”를 “골재”로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7-186(2017.09.29.)호로 고시한 소로3-장동5호선의 도로 연장이 착오 산정 및 고시되어 정정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장동2	8	국지도로	374	중로3-167	장동90	일반도로		2006-07-20	
변경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297	장동171-3	장동90	일반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장동5	소로 3-장동5	· 노선연장 - 연장 : 374m → 297m (감 77m)	· 도로 연장 산정 착오 정정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조서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고시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297	장동171-3	장동90	일반 도로	
기승인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374	장동171-3	장동90	일반 도로	
금회승인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297	장동171-3	장동90	일반 도로	착오 정정

3.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 로 명 주 소 부 여 사 유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도 로 명 고 시 일)	비 고
오정동 337-13	오정로51번길 28-2	2017.11.03.	건축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95-2	한밭대로1036번길 17	2017.11.03.	건축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와동 154-6	신탄진로350번길 6	2017.11.03.	건축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233-48, 233-49	한남로67번길 35-4	2017.11.03.	건축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건축법 상 도로지정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44-5 외 1필지의 건축법 상 도로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변경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 유 자	비 고
		면 적	너 비	길 이		
당초	장동 344-5	170㎡	4m	34m	이병욱, 이정만, 이명욱	
	장동 344-24	5㎡	1m	4.5m	김승인	
변경	장동 344-5	167㎡	4m	34m	이병욱, 이정만, 이명욱	도로면적 3㎡ 감소
	장동 344-24	5㎡	1m	4.5m	김승인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번호	점용목적	굴착장소	시행자(점용자)	시설물종류	포장종류	굴착연장(m)	굴착면적(m ²)
2017-69호	가스관 매설 및 철거	계	CNCITY 에너지	가스관	아스팔트	4.0	6.4
		비래동 559-30 앞(신규)				2.0	2.4
		비래동 559-30 앞(철거)				2.0	4.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재난위험시설의 지정(D등급)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재난위험시설 지정

대상시설			지정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용호교	대전 대덕구 (용호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안전점검결과 D등급판정	D등급	- 매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 보수·보강공사 시행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042-608-52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 042-608-5345)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5-218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대화동 35-218	9m ²	0.33m	26.99m	조성완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석봉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 업 명 :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483번지 일원(48,540.4m²)
3. 사업시행자 : 대전석봉동지역주택조합(전화: 042-933-1997)
4. 시행자주소 : 대덕구 석봉동 774번지
5. 재결일 및 송달할 서류 : 2017. 10. 20. / 재결서 정본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033번길 20 대덕구청 별관2층 도시과(☎ 042-608-5102)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토지 등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75- 21	도	49	원창등마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외 1인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593 번길 69	분당상호 저축은행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7층	근저당권
							정재연	대전 서구 도산로 80-3	가압류

9.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끝.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

1. 장동 187번지 일원의 도로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대덕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다 음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18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2) 사업의 명칭 :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도로명	사업내용	위치		비고
			시점	종점	
도로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 L=150m, B=6.0m	장동 171-3번지	장동 187번지	일부개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고시일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52).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권리의종류 및 내용	비고
	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1	장동	796	구	5,803	495	농림축산	농림축산식품부					
2	장동	795	도	1,795	244	국유지	국토교통부					
3	장동	168	답	2,446	89	송강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30번길 4-1	1456/ 2446	구봉신 용 협동조 합	대전 서구 구봉로 133 201호(관저동)	지상권자	
						송인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로278 번안길 13	990/ 2446	송인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아이파크 삼성동웨스트윙 803	근저당권 자	
									구봉신 용 협동조 합	대전 서구 구봉로 133 201호(관저동)	근저당권 자	
4	장동	167	답	2,089	8	송인걸	대전 대덕구 장동 188					
5	장동	186	대	60	50	국유지	국토교통부					
6	장동	187	대	1,160	11	황경옥	대전 대덕구 장동 187		회덕농 업 협동조 합	대전 대덕구 중리동 411-4	근저당권 자	
									회덕농 업 협동조 합	대전 대덕구 중리동 411-4	지상권자	
총 계				13,535	897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 도 장동 진골천, 이현동 심곡천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예정)	준공 (예정)		
진골천	장동, 이현동 침수위험 지역정비 공사	장동 17 1-3	장동 18 7	-	260m	-	2017.12	2018.12	재해예방	수용·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별첨
심곡천	"	이현동 151	이현동 222-1	-	60	-	"	"	"	"

열람서류

1. 시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도서(별첨)
2.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별첨)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열람장소 : 대덕구청 건설과(tel : 042-608-525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토·일 공휴일 포함)

사 용 또 는 수 용 할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장동, 이현동 침수위험지역 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동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공구-진골천(1)											
1	장동	796	구	5,803	685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2	장동	171-3	답	1,115	138	송태섭	대전 서구 정림동 640 우성@126동 1103호				
3	장동	171-2	도	60	60	공유지	대전광역시				
4	장동	176-2	도	46	18	공유지	대전광역시				
5	장동	176-1	답	440	168	곽영복	대전 중구 목동 현대아파트 103동 402 호	대전축산업 협동조합	대전 서구 둔산로50 (둔산동)	근저당권자	
6	장동	171-4	도	1,437	103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7	장동	795	도	1,795	202	국유지	국토교통부				
8	장동	814	도	694	47	국유지	국토교통부				
9	장동	170-2	답	2,840	150	김용의	대전 대덕구 장동 108	신탄진농업 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동 6 0-6	근저당권자	
10	장동	170-4	도	78	78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11	장동	168	답	2,446	370	송강섭 외 1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관교원로30번길 4-1	송인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 7 아이파크 삼성동웨스 트빙 803	근저당권자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 서구 구봉로 133 201호(관저동)	근저당권자	
								구봉신용 협동조합	대전 서구 구봉로 133 201호(관저동)	지상권자	
12	장동	178-2	도	40	10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13	장동	167	답	2,089	251	송인걸	대전 대덕구 장동 188				
14	장동	186	대	60	10	국유지	국토교통부				
소 계				18,943	2,29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2)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2공구-배오개천											
1	이현동	222-3	답	459	194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2	이현동	222-1	답	1,009	51	김진환 외 2인	대전 대덕구 이현동 347				
3	이현동	150-2	답	253	12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4	이현동	151	답	1,580	4	김현기	대전 대덕구 이현동 175				
5	이현동	151-2	답	3	3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6	이현동	152-1	답	9	9	공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7	이현동	707-2 1	구	3,249	288	국유지	국토교통부				
소 계				6,562	561						
합 계				25,505	2,851						